

**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**
(이상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8.

발 의 자 : 이상희 · 엄태영 · 곽규택
고동진 · 박준태 · 최은석
한지아 · 김성원 · 김승수
최수진 · 김태규 · 박수영
박성훈 · 조승환 · 우재준
정동만 · 김장겸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, 수요 창출, 재생철자원이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철강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은 상당 부분이 단순 토목용 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

의 보급·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지방자치 단체의 장기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 신설).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철강부산물 재활용 촉진 시책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강부산물(이하 이 조에서 “철강부산물”이라 한다)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 재활용제품의 보급·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, 그 소속 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의무 사용 비율을 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품질 및 성능 검증과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,

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7조의2(철강부산물 재활용 촉진 시책의 수립·시행 등) ①</u>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강부산물(이하 이 조에서 “철강부산물”이라 한다)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 재활용제품의 보급·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, 그 소속 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u>

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부산물
재활용제품의 의무 사용 비율
을 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
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품질
및 성능 검증과 새로운 용도
개발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
시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
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
을 할 수 있다.